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4691

제출연월일 : 2024. 10. 15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,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·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운영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법령·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(안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).

법률 제 호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노숙인시설의"를 "노숙인시설"로, "위한 교육"을 "위한 인권교육(이하 "인권교육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 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(이하 "인권교육기관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
- 3.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4.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

⑤ 인권교육의 내용,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·방법 및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·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0조의2(보수교육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(이하 "보수교육"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보수교육기관으로지정할 수 있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수교육기관(이하 "보수교육기관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
 - 3.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- 4.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
 - ④ 보수교육의 내용,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절차·방법 및 보수교육기

관의 지정취소·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인권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가 받은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권교육으로 본다.
- 제3조(인권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·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되어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으 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지정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제20조(인권교육) ① 노숙인시설 제20조(인권교육) ① 노숙인시설 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----- 위한 인권 을 받아야 한다. 교육(이하 "인권교육"이라 한 다)----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로 정한다.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 관 · 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<신 설>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(이하 "인권교육기관"이라 한다)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.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<신 설>

<신 설>

<u>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</u> <u>한 경우</u>

- 3.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4.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
- ⑤ 인권교육의 내용,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·방법 및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·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의2(보수교육)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 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(이하 "보수교육"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수 있다.
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수교육기관(이하 "보수교육기관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
- 3.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4.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
- ④ 보수교육의 내용, 보수교육 기관의 지정 절차・방법 및 보 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・업무 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.